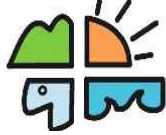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73호 2016년 1월 15일(금)

공 고

-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관광과(전화 : 033-639-2545, FAX : 033-639-238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관광과 관광홍보축제팀(033-639-2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역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마을 등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관광·문화축제, 해양·산악·산업축제, 마을단위 각종 축제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
2. 농·어촌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7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할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라. 지원 사업(안 제5조)
- 마. 지원 대상·시기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담당(전화: 033-639-2044,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033-639-2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노인 무료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식당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사업
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등 노인관련 행사
4. 중앙 및 도 주관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5. 노인회 중앙 및 도 주관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6. 효행장려 시책 및 교육 사업
7.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문화·여가 프로그램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만60세 이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자로 한다.

②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만60세 이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로 한다.

③ 급식지원 시기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3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7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